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41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김기현・임이자・유상범

김정재 • 이달희 • 백종헌

박성민・김 건・조정훈

김위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군인사법」에서 이미 폐지된 영창제도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무경찰대법"이라 함)과 같은 전환복무 관련 개별법에 존치하고 있으므로 인해 위헌 논란 등 군 영창제도의 폐지 의미를 무색하고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병의군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병역법」과 병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군인사법」과 충돌할 여지도 있음.

첫째, 영창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군인사법」상의 영창 징계조항이 폐지된 지금, 의무경찰대 법상의 영창 징계조항을 폐지하여 법률 상호 간의 체계 적합성을 갖 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셋째, 국방부가 2021년 이후 전환복무자의 모집을 중단하고 사실상 전환복무제도의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 에서 법적 실익이 상실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조의5 및 제5조 등).

법률 제 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2호 중 "정직 및 영창(營倉)"을 "정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창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된 때 및 복 무"를 "복무"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창"을 "복무기강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창"을 "복무기강교육"으로, "구금장소(拘禁場所) 에 구금하는"을 "장소에 설치된 교육시설에서 복무 규율과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	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		
기간 계산 등) ① 다음 각 호	기간 계산 등) ①		
의 기간은 「병역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			
경찰대 대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정직 및 영창(營倉)</u> 기간	2. <u>정직</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휴직ㆍ정직 또는 직위해제	②		
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복직한			
때와 영창의 처분을 받은 사람	<u>복무</u>		
이 그 집행이 종료된 때 및 복			
<u>무</u> 를 이탈한 자가 귀대한 때에			
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			
장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그			
처분기간 또는 복무이탈기간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징계) ① 의무경찰에 대한	제5조(징계) ①		
징계는 강등, 정직, <u>영창</u> , 휴가	<u>복무기강교육</u>		
제한 및 근신(謹愼)으로 하고,			

-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2. (생략)
- 3. <u>영창</u>: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의무경찰대·함정(艦艇)내 또는 그 밖의 <u>구금장소(拘</u>禁場所)에 구금하는 것

4. • 5. (생략)

② 영창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으로 그 징계처분을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하여야 한다.

제6조(소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결정이었을 때까지는 해당 징계처분에 따라야 한다. <u>다만, 영창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가 청구된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u>

<u>.</u>
1.・2. (현행과 같음)
3. <u>복무기강교육</u>
장소에 설치된 교육시설
에서 복무 규율과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하는
4.·5. (현행과 같음)
<u><</u> 삭 제>

제6조(소청) ① (현행과 같음)

(2)	 	
	 <u><</u> 단사	<u> </u>